Toiler Comfort & Clean Toilet	**물질안전보건자료** **(Material Safety Data Sheet)**	주식회사 토일러	
		PAGE	1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제 품 명	뉴 프라임 엑센트				
나.일반적 특성	핑크색의 액체				
다.제품의 용도	화장실전용 강력세정제				
라.제조자 정보	제조회사	회 사 명	㈜ 토일러	연락처	1544-3314
		주 소	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88번길 74, 1층		
마.공급자/유통업자 정보	공급회사	사업장명	제조자 정보와 동일		
		연 락 처			
전 화 번 호	1544-3314				
작성부서 및 이름	㈜ 토일러 (자료협조 : KIST 특성분석센터)		작성 일자	2002. 08. 10	
개정회수	10회		최종개정일	2015. 07. 01	

2. 유해・위험성

가.유해 위험성 분류

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: 구분1

피부 과민성 : 구분1

피부 부식성/ 피부 자극성 : 구분2

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: 구분3

나. 경고 표지 항목

그 림 문 자	
신 호 어	경 고
유해위험문구	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
예방조치문구

예방	P261 (분진·흄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의 흡입을 피하시오.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. P280 (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)를(을) 착용하시오.
대응	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.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P310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저장	P403+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.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.
폐기	P501 (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)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.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(NFPA)

NFPA 등급(0-4 단계) : 보건=3 화재=0 반응성=0

구 분	보건	화재	반응성
sweetpotato starch	0	0	0
Glycerin	1	1	0
tween 80	1	1	0
softanol 90	0	1	0
SLES	2	1	0
citric acid	3	1	0
적색	2	1	0
apricot	1	0	0
Water	0	0	0

물리적 위험 : 가연성 액체 및 증기. 증기는 증발 연소를 야기할 수도 있음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

화학물질의 명칭	식별번호(CAS번호)	함유량(%)
sweetpotato starch	-	0.1 ~ 0.8
Glycerin	56-81-5	1.0 ~ 3.0
tween 80	9005-67-8	0.4 ~ 1.0
softanol 90	84133-50-6	0.2 ~ 0.5
SLES	9004-82-4	0.5 ~ 2.0
citric acid	77-92-9	3 ~ 8
적색	915-67-3	0.35~0.5
apricot	-	1 ~ 1.2
Water	7732-18-5	90~94

4.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

다. 흡입했을 때 :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.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

라. 섭취했을 때 :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

5.폭발・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 소화제 :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,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

나. 화학물질로 부터 생기는 특정유해성 :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

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1)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

2)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

3)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

6.누출 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직업적 유출 :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,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
7.취급 및 저장 방법

가.안전취급요령	나.보관방법
1) (분진·흄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의 흡입을 피하시오. 2)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. 3)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/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 4)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. 5)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	1)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. 2) 직사광선을 피하고 식료품, 의약품, 음식과 혼합저장하지 말 것. 3) 저장용기는 프라스틱제로 하여 안전하고 견고한 제품을 사용할 것. 4)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.

8.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

가. 국내 노출기준 - 글리세린 : TWA - 10mg/m3 , 그 외 원재료 : 해당없음 또는 자료없음

나. ACGIH 규정 - 글리세린 : TWA - 10mg/m3 , 그 외 원재료 : 해당없음 또는 자료없음

다.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없음

라. 개인보호구 : 노출되는 기체/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

마. 안전장갑 :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.

바. 보호물질유형 : 네오프렌, 폴리염화 비닐(PVC)/나이트릴 부타디엔 고무(NBR)

사. 호흡보호구 :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.

1)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.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.
2)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(유기기스용 정화통 및 여과재)
3)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(유기기스용 정화통 및 고효율 미립자)
4) 공기 여과식 호흡보호구(전면형, 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분진, 미스트, 흄용 여과재)
5)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(전면형 및 고효율 미립자 여과재)

아.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

1)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
2) 공기호흡기(전면형)

9.물리・화학적 특성		10.안정성 및 반응성
가. 물리적 상태	핑크색 액체	가. 반응성 :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.
나. 끓는점/끓는점 범위	100℃	나. 혼합금지 물질 : 알칼리성의 제품과 혼합하지 말 것.
다. 녹는점/녹는점 범위	자료없음	다. 위험한 분해생성물 : 열분해생성물 또는 연소생성물 : 탄소산화물
라. 향과 외관	살구향의 분홍색	라. 중합 반응 : 중합하지 않음
마. 증기압	자료없음	
바. 증기 밀도 (공기 = 1)	알려진 바 없음	
사. 비중 (물 = 1)	1.02 @20℃	
아. 용해도	물과 임의의 비율로 용해됨	
자. pH	2.0~3.5	
차. 폭발성	자료업음	
카. 분자량	자료없음	
타. 점도	70 ~ 150 cp	
파. 분배계수	자료없음	
하. 증기밀도	자료없음	

11.독성에 관한 정보
가. 발암성 :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음.
나. 산업안전보건법 : 미규정
다. 국소영향 - 자극제 : 흡입, 눈
라. 급성독성 : LD50 27200 mg/kg Rat (rat/LD50/12600mg/kg(IUCLID))
마. 경피 : LD50 > 10000 mg/kg Rat
바. 흡입 : 자료없음
사.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: 토끼에 대한 피부자극 시험결과 : 중정도 자극
아.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: 토끼에 대한 눈자극 시험결과 : 심한 자극
자. 피부과민성 : 섭취로 인해 아픈입술,두통,천식,비음.방해,일반적인 피로,가려움 일으킴 피부과민성일 수 있음
차. 생식독성 자료 : 자료없음
카.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 : rat(흡입):1-4mg/l
타. 기타 특이사항 : 자료없음

12.환경에 미치는 영향
가. 생태독성 (어류) : LC50 48 mg/ℓ 96 hr Leuciscus idus 나. 잔류성 및 분해성 : log Kow -1.7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.

14.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(UN No.) :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/ softano90 : 3082 / Tween80 : 2810

나. 적정선적명 : 해당없음

다. ICAO / IATA, ADR, RID 에 의한 분류 및 규제 : 해당없음

15.법적 규제 현황

가. 한국 규정 :
1)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규제 - 글리세린 : 노출기준설정물질
2)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3)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- 글리세린 : 제4류 제3석유류(수용성) 4000리터
4)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일반폐기물
5)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나. 미국 규정 :
1) SARA 302 규정 (40CFR355.30) : 해당없음
2) SARA 304 규정 (40CFR355.40) : 해당없음
3) SARA 313 규정 (40CFR372.65) : 해당없음
4) OSHA 규정 (29CFR1910.119) : 해당없음

다. 주 규정 : 캘리포니아 제안 65호(음용수 처리 규정) : 해당없음

라. 유럽연합 규정 : 유럽연합(EC) 번호(EINECS) : 분류가 확정되지 않음.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참고 자료
1) Merck index
2) 유도물 성상 및 관리요령집(환경부 발행)
3)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관리지침(노동부)
4) 화학 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기준(노동부)
5) 화학물질별 노출기준 및 관계법령규정 (노동부)
6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검색